

등록번호	교육체육과-13712
등록일자	2014.12.15.
결재일자	2014.12.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생활체육팀장	교육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이재원	박수돈	김종석	전결 12/16 이종두
협 조			

##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계획



행정관리국  
교육체육과

#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계획

저소득 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I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지급대상 사업범위 및 기준보조율) 등
-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안)\_(문화체육관광부)

## II

### 추진방향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내(수급가구신청자 적을시 차상위 계층 포함) 만5세 ~ 만18세 유·청소년(1997년 1월 1일 이후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2014년 수혜자도 2015년 재신청시 신청가능
  - 【다만 신청자가 많을시 신규신청자 우선 선정】
- 대상자 선정은 사업개요 수혜자선정 순위에 따라 지정하되,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 III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기여

■ 운영기간 : 2015. 1. ~ 12.

■ 신청기간 : 2014. 12. 15.(월) ~ 12. 28.(일) 까지(전국동시신청)

※ 전국동시신청기간 후 상황에 따라 수시모집신청 가능

■ 모집정원 : 51명(매칭예산 34명, 구비예산 17명)

※ 변동 상황 있을시 수혜자 선정순위에 따라 회원 추가 확보

### ■ 수혜자 선정 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신규가입자**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기존수혜자
- 3순위 : 차상위(의료,자활,장애인,한부모,우선돌봄)**신규가입자**
- 4순위 : 차상위(의료,자활,장애인,한부모,우선돌봄)기존수혜자

※ 신규가입자는 신청 후 익월부터 사용 가능

■ 운영장소 : 공공체육시설 및 자치구 선정 사설체육시설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내 유소년 및 청소년  
만5세 ~ 만18세(1997년 1월 1일 이후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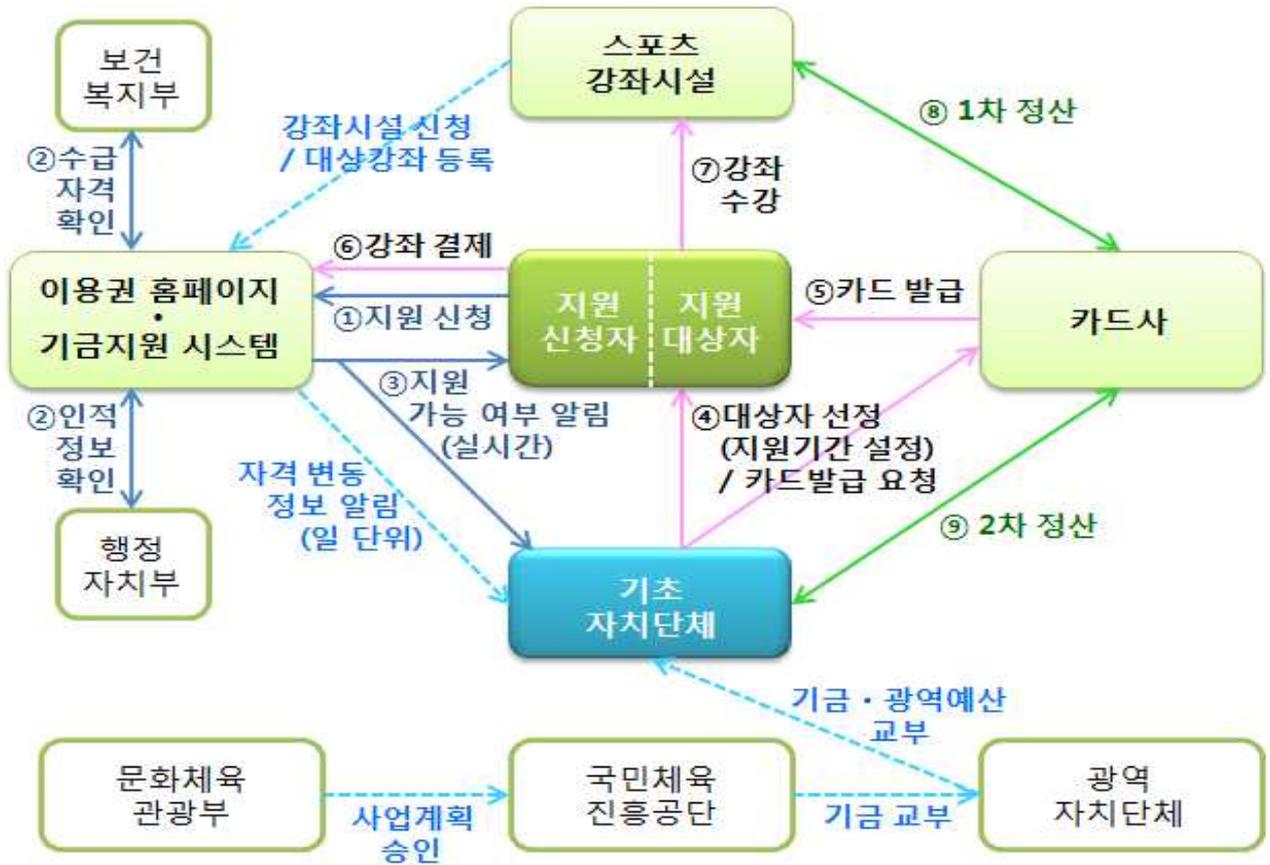
### ■ 지원종류

- 스포츠강좌 : 월 최대 7만원

※ 7만원 이상인 강좌 수강시 차액은 이용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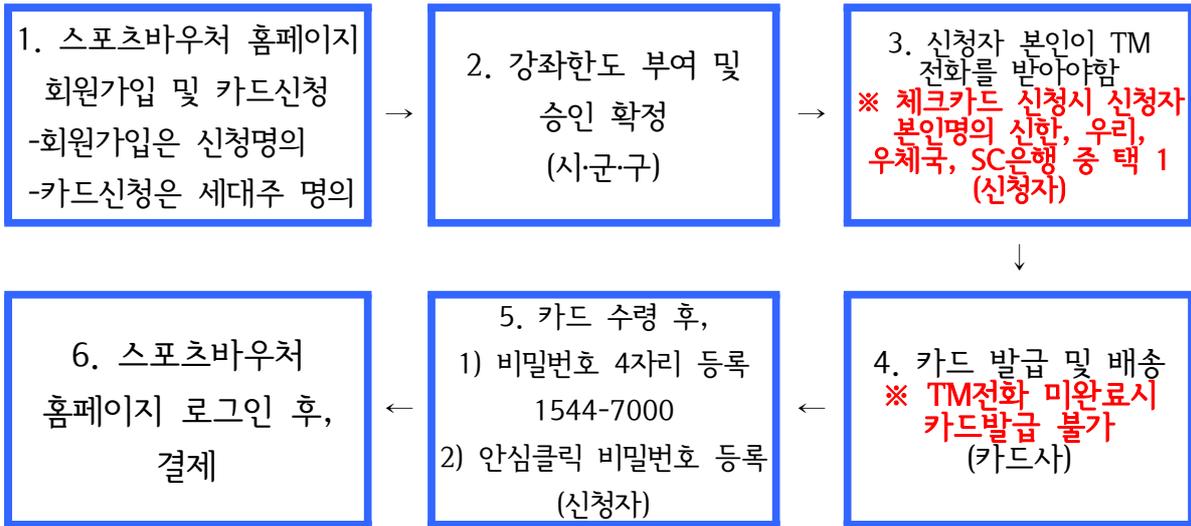
※ 상기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스포츠바우처 회원 선정 및 지원방법



구 분	내 용
1. 회원가입 및 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a href="http://www.svoucher.or.kr">www.svoucher.or.kr</a> <스포츠바우처>)에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및 카드 신청
2. 수급자격 및 인적정보 확인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여부 실시간 확인 및 시·군·구에서 회원 선정 확정
3. 지원가능여부알림	2015년부터 실시간으로 알림 가능
4. 카드발급 요청	자치단체 → 카드사에 카드발급 요청
5. 카드발급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스포츠바우처 카드 발송
6. 스포츠강좌 결제	발급받은 카드로 스포츠강좌 결제
7. 스포츠강좌 수강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강좌수강
8.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 정산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간 1차 정산
9. 시·군·구와 카드사 정산	시·군·구와 카드사간 매월 25일 2차 정산

< 이용 및 신청과정 도표 >



**N**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방향**

- 최대한 많은 사업자를 등록하여 국민의 선택권 강화
-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 여부(인력·경험·장비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시설의 안정성 확인

**선정대상**

-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사업자등록자 (시설 또는 스포츠강좌 운영자)
  - 시설 : 체육활동 강화가 가능한 공공시설, 사설체육관 등
  - 강좌운영자 : 체육강좌 프로그램 운영자(축구교실, 어린이야구단, 키크농구단 등)

**선정과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바우처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 웹가맹점 등록 및 나이스정보통신으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 구에서 승인 후 최종 선정

## V

## 지 원 종 류

### ■ 스포츠강좌이용권

- 수강강좌 : 월 단위 수강 형태의 스포츠강좌 지원
- 지원금액 : 월 최대 70,000원 지원

### ■ 제한사항

- 강좌등록 후 월 강좌의 50% 미만 출석시 지원 중지 가능
  - 단 입원, 감기, 학교수업 출석등의 사유인 경우 제외
  - 강좌시설에서 미통보 누적2회시 강좌시설 선정 취소 가능
- 기타 불성실 이용자(2개월이상 강좌미등록 등) 지원 중지 가능
  - 단 사고, 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이 있을시 제외
- 생활·문화 강좌 사용 제외
  - 예) 영어, 음악, 서예, 한자, 풍물, 바둑, 레고 등
- 일일 스포츠입장 지원 불가
- 한달에 1인 1강좌 수강 원칙(2개 강좌 신청 불가)

## VI

## 정 산

### ■ 정산개요

- 1차 정산 : 스포츠바우처 사업자와 카드사간 정산
  - 2015. 1. ~ 4. : 결제일에 따라 주4회 정산
  - 2015. 5. ~ 12. : 결제일과 관계없이 당월 결제분을 익월 5일에 일괄지급
- 2차 정산 : 구와 카드사간 매월 25일까지 정산
  - 매월 17일부터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한카드사에서 요청한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내부 회계 처리
  - 매월 25일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

## Ⅶ 행정 사항

-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
- 예산확보 즉시 수혜자 선정순위에 따라 회원 추가 확보
- 구 홈페이지 회원모집 공고 후 회원 선정

## Ⅷ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43,668천원
  - 매칭예산 : 국비 20,068천원(70%), 사비 4,300천원(15%), 구비 4,300천원(15%)
  - 구비예산 : 15,000천원
- 예산과목 : 교육체육과, 생활체육육성강화, 생활체육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붙임 : 1.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홈페이지 공고문 1부.  
2.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홈페이지 회원 신청 방법 1부. 끝.